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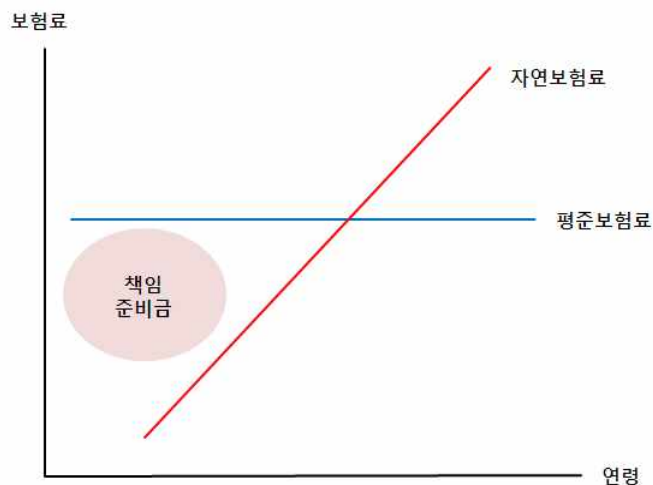
생명보험의 이해 4: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

오병국 연구원

■ 생명보험 중 일반종신보험의 경우 초기 보험연도에서 발생하는 초과보험료 수입¹⁾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를 책임준비금이라 함.

- 일반종신보험의 연납평균순보험료는 초기의 보험연도에서 자연보험료를 초과하고 후기의 보험연도에서는 자연보험료 보다 작게 됨.
- 이 때 후기의 부족하게 되는 보험료(자연보험료 - 연납평균순보험료)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초과보험료의 적립금을 책임준비금 형태로 보유하게 됨.

〈그림 1〉 초과보험료와 책임준비금



- 일반적으로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지급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적립이 요구됨.

1) 연납평균순보험료 - 자연보험료

■ 책임준비금의 적립방법은 ‘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’, ‘질멜(Zillmer)식 책임준비금’, ‘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’으로 구분되어짐.

-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은 평준순보험료만을 이용하여 계산되며, 우리나라의 경우 신계약비를 이연²⁾할 수 있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질멜(Zillmer)식 책임준비금은 초년도 이후 제2보험연도부터 책임준비금의 증가가 빠르게 되도록 설계된 것임.
 - 질멜식 순보험료는 초년도에 다액의 신계약비가 소요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1년도의 부가보험료를 평준의 경우보다 크게 하고, 제2년도부터는 부가보험료를 평준의 경우보다 작게 하여 계산됨.
 - 질멜식 책임준비금의 기본방식은 초년도의 사업비 초과부분을 순보험료에서 충당하고, 초년도의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 잔여분이 되며, 초년도의 사업비 초과부분은 차년 이후의 부가보험료에서 균등하게 상각하는 것임.
-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은 해약환급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함.

■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입이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고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보험계약자가 해약을 청구할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이라 함.

-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이를 해약공제라고 함.
- 우리나라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계산한 금액과 표준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정의됨.
 - 표준해약환급금 =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- 미상각신계약비 =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- (총예정 신계약비 - 경과된 신계약비)
 -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 즉, 표준해약환급금이 음수인 경우 이를 0으로 처리함.

2) 이연신계약비는 7년 이내에 상각하여야함.